

의안
번호

735

【울산광역시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· 제출자 : 2009. 11. 11(수) ·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9. 11. 16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09. 11. 30(월)

2. 제안이유

- 가. 외국인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
- 나. 이를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으로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외국인 주민의 지위, 구의 책무,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(안 제3조 ~ 제6조)
- 나. 외국인주민지원지문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임기 및 회의 등(안 제7조 ~ 제13조)
- 다.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(안 제14조)
- 라.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위탁(안 제15조)
- 마.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유공자 포상(안 제16조 ~ 제17조)

4. 관련법령

《 관련 법령 》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 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

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】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5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(2009. 10. 19 ~ 11. 9)
- 외국인 현황

기준일: 2009.4.30

총계			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자			한국국적을 취득한 자			외국인 주민자녀		
계	남	여	소계	남	여	소계	남	여	소계	남	여
2,461	986	1,475	1,783	698	1,085	164	32	132	514	256	258

6. 검토의견

가. 본 조례안은

- 외국인주민을 지역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
-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하루빨리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 발휘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8조 시행규칙까지 1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을 보면

-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외국인 주민의 지위, 구의 책무,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,
-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 설치,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.

다. 본 조례안은

-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2009. 6. 8일 제정된 『울산광역시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』와 유사한(중복적인) 경향이 있고, 본 조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이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.